

의안  
번호

38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82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159호, 2022.12.27. 공포·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추가(안 제5조)

-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9. 26.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퇴직한 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로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